

사설

최근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건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지난 23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속초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왜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통합 반대에 앞장 서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본지 주최의 긴급좌담회가 KBS와 MBC 지방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는, 본지가 고성지역에서 반대여론을 몰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호 지면에 자세하게 보도한 것처럼, 이번 좌담회는 반대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그런데 지역언론으로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본지는 사실을 통해 현재 속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본지는 태생적으로 고성군이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지역언론이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창간이념에서도 명시하였듯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발행되

는 신문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성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이 각기 다른 시각과 논조를 보이는 것과 같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시·군 통합이 과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속초지역에서 다시는 통합카드를 꺼낼 수 없도록 고성군과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한다.

지난 23일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일부 패널이 지역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통합에 찬성하기도 했으며,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주민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따라서 단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치지 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통합 논란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 지금 속초지역에서는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은 자리가 사라질까봐 반대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따라서 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거세도 그것이 주민들의 진정한 속내는 아니라고 오관하고, 언제든 또다시 통합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찬성 의견을 보이는 주민들을 결코 ‘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찬성 의견을 보이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왕따’로 취급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군 통합에 대한 고성신문의 입장

기고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소방관은 소방이라는 조직이 생긴 이래 끊임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시간만큼 소방의 서비스도 단순화재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일상생활속에서 긴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발전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소방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시민의

식도 성숙해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젠가 독일과 한국의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비교한 영상이 화재가 된 적이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 소방차가 지나가자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영상은 길을 잘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 끼여들기까지 하는 모습도 더러 보였

다.

구급출동은 어떠한가? 위급한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할 구급차가 단순감기나 술에 취한 사람의 후송을 위해 출동을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손실과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단순 문개방이나 동물구조는 그 사안이 긴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다른 비응급환자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119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 상 옥
노학119안전센터 3팀장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문)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일방으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국에서

고성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2,167억 원보다 9.4% 증가한 2,372억 원으로 편성돼, 지난 25일 고성군의회에 제출됐다.

이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차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한 뒤, 16일 오전 10시 분

회의장에서 의결할 것이다.

새해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해 주기 바란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